영국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등록에서 전면적 체제로

영국은 가상자산을 금융서비스로 규제하기 전 5년 동안 자금세탁방지 목적의 등록을 통해 규제하였습니다. 2020년 1월 10일부터 가상자산 교환업자와 수탁형 지갑 제공자는 2017년 자금세탁방지규정(Money Laundering Regulations 2017)에 따라 금융행위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에 등록해야 했습니다. FCA는 신청의 대다수를 거부하거나 철회되게 하였으며, 그 결과 등록 사업자는 소수에 그쳤고 여러 대형 거래소가 다른 관할권으로 떠났습니다. 2023년 10월 8일부터는 금융광고 규제가 가상자산에 적용되었습니다. 그 이후 영국 소비자에 대한 모든 광고는 인가받은 자가 전달하거나 승인해야 하며, 또는 등록 가상자산 사업자가 특별 면제에 따라 해야 합니다. 이때 위험 경고, 숙려기간, 인센티브 금지가 적용됩니다.[1]

2023년 금융서비스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23)은 재무부에 가상자산을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의 규제 범위에 포함시킬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2023년의 의견수렴과 2025년 4월의 시행령 초안을 거쳐, 재무부는 2026년 초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가상자산) 규정 2026(SI 2026/102)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새로운 규제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대상 활동을 창설합니다. 적격 가상자산 거래플랫폼의 운영,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서의 적격 가상자산 거래, 거래의 주선, 적격 가상자산의 보호보관, 적격 가상자산 스테이킹 서비스의 운영, 그리고 영국 내 적격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입니다. 또한 공모 및 거래 허용에 관한 체제와 가상자산에 관한 시장남용 체제를 창설합니다.[2] FCA의 인가 신청 창구는 2026년 9월 30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열릴 예정이며, 그 후 2027년 10월 25일에 체제가 시행됩니다. 이 기간 중 신청하였으나 시행일까지 결정을 받지 못한 사업자는 경과적 취급을 받습니다.[3]

영국 체제의 두 가지 특징은 스위스 또는 싱가포르 독자의 주의를 요합니다. 첫째, 지역적 적용범위입니다. 재무부는 영국 일반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해외 사업자는 영국에서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일반투자자 업무에 대해서는 해외사업자 예외(overseas-persons exclusion)를 두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반면 영국 인가 사업자 및 기관고객과의 업무는 해외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국 일반투자자 이용자가 있는 추크나 싱가포르의 거래소는 MiCA상 EU 자회사가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2027년 10월까지 영국 자회사가 필요합니다. 둘째, 스테이블코인입니다. 이 규정은 영국 내 적격 스테이블코인의 발행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스위스나 싱가포르 발행인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국 플랫폼은 FCA가 그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에만 해외 스테이블코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파운드 스테이블코인은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이 별도로 규제하며, 2025년 말에는 경과기간 중 개인 보유액에 상한을 두는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4]

재산법: 제3의 범주

영국은 대륙법계 독자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 기여를 하였습니다. 잉글랜드 및 웨일스 법률위원회(Law Commission)는 2023년, 일부 디지털 자산은 점유물(thing in possession)도 권리물(thing in action)도 아니라고 결론짓고, 동산의 제3의 범주를 법률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2025년 재산(디지털 자산 등)법(Property (Digital Assets etc) Act 2025)은 2025년 12월 15일 국왕의 재가를 받았습니다. 이 법의 유일한 실체 조항은, 어떤 물건이 디지털 또는 전자적 물건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을 포함하여 단지 점유물도 권리물도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동산권의 객체가 되는 것이 방해받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이 법은 범주의 발전을 법원에 맡기고 있습니다.[5] 싱가포르의 *ByBit* 법원은 같은 분석을 검토한 후, 제3의 범주 없이도 USDT를 권리물로 취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홍콩의 *Gatecoin* 사건도 같은 견해를 취하였습니다. 따라서 영국의 이 법률은 보통법 내부의 분기를 나타내며, 싱가포르 법원은 사건이 이 구별에 좌우될 때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토큰이 누구에 대해서도 청구권을 수반하지 않아 '권리물'이라는 분류가 무리가 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스위스법에는 이에 상응하는 문제가 없습니다. 스위스법은 토큰을 청구권의 범주에 끼워 맞추려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조세

영국은 개인의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하여 연간 비과세 한도 3,000파운드를 초과하는 부분에 18% 또는 24%로 과세하며, 소득으로 수령한 채굴, 스테이킹 및 에어드롭에는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법인은 25%의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국세관세청(HM Revenue and Customs)은 가상자산 매뉴얼(Cryptoassets Manual)에서 그 입장을 공표합니다. 영국은 2026년 1월 1일부터 CARF를 시행하며 최초 교환은 2027년이고, 영국 이용자에 대한 국내 보고도 병행합니다.[6] 스위스 또는 싱가포르 거주자에게 비교는 간단합니다. 영국은 추크, 싱가포르, 홍콩이 과세하지 않는 양도차익에 과세합니다. 대량의 토큰을 보유한 영국 창업자가 제P편 제I장에서 이전 후보로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스위스 또는 싱가포르 고객이 예상해야 할 사항

영국은 신뢰할 수 있지만 느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체제를 제공하며, 상사분쟁에 관해서는 세계 최고의 법원을 갖추고 있습니다. 영국 일반투자자 고객이 있는 추크나 싱가포르 사업자는 영국 자회사 설립과 2026년 9월 30일에 열리는 창구에서의 FCA 신청을 계획해야 합니다. 영국 기관 거래상대방만 있는 사업자는 해외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영국 일반 대중에게 공모하는 토큰 발행인은 2027년 10월부터 공모 규정을 충족해야 하며, 그 공시 체제는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MiCA의 백서와 유사합니다. 펀드매니저에게 영국은 투자협회(Investment Association)의 기준과 런던증권거래소의 일반투자자용 상장지수증권(ETN) 측면에서 유용합니다. FCA는 2025년 10월 일반투자자에게 이를 개방하였습니다. 분쟁의 경우, 영국인 피고나 영국에 보유된 자산이 관련된 사건에서는 런던이 여전히 선호되는 법정지이며, 런던의 동결명령 판례는 싱가포르와 홍콩 법원이 따르는 모델입니다.[7]

주

1. Money Laundering, Terrorist Financing and Transfer of Funds (Information on the Payer) Regulations 2017, reg. 14A, 2020년 1월 10일부터 개정 적용.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Financial Promotion) (Amendment) Order 2023. FCA, Policy Statement PS23/6, "Financial promotion rules for cryptoassets", 2023년 6월. ↩
2.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Cryptoassets) Regulations 2026, SI 2026/102, legislation.gov.uk 게재본. 적격 가상자산의 공모 및 거래 허용에 관한 Part와 시장남용에 관한 Part, 그리고 Regulated Activities Order를 개정하는 reg. 40을 포함합니다. ↩
3. A&O Shearman,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Cryptoassets) Regulations 2026 made and published", 2026년 2월 4일. 2026년 2월 26일 FCA 규칙제정권의 개시, 2026년 9월 30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의 인가 신청 창구, 2027년 10월 25일 체제 시행을 보도합니다. ↩
4. HM Treasury, Policy note accompanying the draft Cryptoassets Order, 2025년 4월, 지역적 적용범위에 관하여. FCA, CP25/14, "Stablecoin issuance and cryptoasset custody", 2025년 5월. Bank of England, Consultation Paper on the regulatory regime for systemic payment systems using stablecoins, 2025년 11월. ↩
5. Property (Digital Assets etc) Act 2025, s. 1. Law Commission, "Digital assets: Final report", Law Com No 412, 2023년 6월 28일. ↩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6. HMRC, Cryptoassets Manual, CRYPTO20000 이하(개인) 및 CRYPTO40000 이하(사업자). Taxation of Chargeable Gains Act 1992, s. 1H 및 Sch 1B(연간 비과세 한도). The Cryptoasset Service Providers (Due Diligence and Reporting Requirements) Regulations 2025. ↩
7. FCA, Policy Statement PS25/14 on lifting the ban on retail access to cryptoasset exchange-traded notes, 2025년, 2025년 10월 8일부터 시행. ↩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